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0가단530226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2나688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0가단5302267 판결

전문

원 고 1. A

2. B

3. C

4. D

5. E

6. F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심 담당변호사 송재성, 정용기

피 고 G

소송대리인 변호사 두완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전경능

변 론 종 결 2021. 10. 20.

판 결 선 고 2022. 1. 12.

주 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3/15 지분에 관하여 원고 A에게,
나. 각 2/15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C, D, E, F에게 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21. 접수 제913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 A에게, 7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20. 11. 1.부터 원고 A가 사망할 때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2017. 8. 13. 사망한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인이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는 원고 A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08. 7. 7.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망인은 2011. 11.경 간암 판정을 받았다. 망인은 2014. 4. 21. 당시 거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딸인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등기부상 등기원인은 '2014. 4. 2.자 매매'였으나, 그 실질은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었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라. 피고는 2015년부터 여주에서 거주하게 되었고, 망인과 원고 A도 2016. 2.경부터 여주에서 함께 생활하게 됨에 따라 피고가 망인 등을 부양하게 되었으며, 망 H은 2017. 8. 13. 사망하였다.

마. 피고는 2019. 1.경 남동생인 원고 F으로 하여금 피고의 여주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는데, 2019. 7. 19. 피고의 사실혼 배우자인 I과 원고 F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 F은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의 여주 집을 떠나 서울에 거주하는 피고 E와 함께 살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고는 원고 A를 부양하지 않게 되었다.

바. 원고 A는 2020. 9. 6.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증여의 조건인 부모 부양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정산하자.'라는 취지로 통보하였고, 원고들은 2020. 10. 16. 망인의 상속인 자격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는 부양조건부였는데 피고가 부양의무를 해태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하니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4, 5 내지 7,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피고가, 부모인 망인과 원고 A가 사망할 때까지, 월 10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 부양을 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담보부 대출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소유 명의를 유지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한 부담부 증여였는데, 피고는 그 중 하나인 원고 A에 대한 부양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피고의 부양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만일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면, 예비적으로, 원고 A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양조건부

증여계약에 따라 부양료 월 100만 원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2014. 4.부터 원고 A가 사망할 때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❶ 이 사건 증여는 망인과 원고 A에 대한 부양을 조건으로 한 부담부증여가 아니다(이하 ‘❶ 주장’이라 한다).

❷ 설령 부양을 조건으로 한 부담부증여라 할지라도, 원고 A는 부양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또한 부양청구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상속의 대상이 아니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이하 ‘❷ 주장’이라 한다).

❸ 설령 이 사건 증여계약 해제사유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민법 제556조 제2항 소정의 6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이하 ‘❸ 주장’이라 한다).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 A는 이 사건 증여계약의 당사자가 아닐 뿐 아니라 월 100만 원의 부양료 지급을 약정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 A의 예비적 청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담부 증여인지 여부

먼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피고가 원고 A 등 부모 사망 시까지 월 10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위 인정사실과 앞서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망인과 원고 A 사이에는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등 모두 6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망인은 생전에 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단독으로 증여하였음에도 다른 자녀 5명이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서 단순 증여라기보다는 부담부증여였을 가능성이 큰 점, 원고 A의 2020. 9. 6.자 정산 통보에 대하여, 피고도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미지급금 차액이 있으니 원고 A에게 소정의 생활비는 지급할 것이고, 사후에도 남은 돈이 있으면 원고 A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지급하겠다.’라고 답변한 사실(갑제1호증) 역시 부모에 대한 부양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는 원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가 여성 동안 원고 A 등 부모를 부양할 것을 조건, 즉 부담으로 한 부담부 증여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피고의 ‘❶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이 사건 증여계약의 해제 여부

상대 부담 있는 증여의 증여자는 부담채무의 내용과 이행여부에 관계없이 수증자가 민법 제556조 제1항 소정의 망은행위를 한 경우 이를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해제는 민법 제556조 제2항과 제558조 소정의 제한을 받게 되는 한편, 부담채무 자체의 불이행을 내세워서도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은 물론 이 때의 해제는 민법 제561조에 의하여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민법 제556조 제2항과 제558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민법 제974조가 규정하는 부양의무 있는 친족 사이에 부양의무를 부담으로 한 증여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4602 판결 참고).

둘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사실혼 배우자인 I과 원고 F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2019. 7. 19. 이후의 어느 시점부터는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상의 부담인 원고 A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위와 같은 위무 위반에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은 피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의 부양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제될 수 있고, 증여자인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그 해제권은 그 상속인이 원고들과 피고에게 공동 상속되는데, 피고는 수증자의 지위를 겸하므로 결국 원고들은 자신들의 상속지분에 한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따라서 피고의 ‘❷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원고들의 2020. 10. 16.자 해제 통보에 따라 이 사건 증여계약 중 원고들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피고는 원고들의 해제권 행사가 민법 제556조 제2항가 정하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피고의 ‘❸ 주장’),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은 부담부증여에서 부담채무 자체의 불이행을 내세워 증여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이므로 민법 제556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❸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

결국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A에게 그 상속지분인 3/15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C, D, E, F에게 각 그들이 상속지분인 2/15 지분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한다(주위적 청구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의 해제를 인정한 이상 예비적 청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판사 차영민

[별지]

목 록

1. 서울시 관악구 [] [] [] 동 제1층 [] 호

(1동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0층 공동주택

지1	69.298m ²	지하계단실	지1	22.69m ²	아파트
1층	324.464m ²	아파트	2층	324.464m ²	아파트
3층	324.464m ²	아파트	4층	324.464m ²	아파트
5층	324.464m ²	아파트	6층	324.464m ²	아파트
7층	324.464m ²	아파트	8층	324.464m ²	아파트
9층	324.464m ²	아파트	10층	324.464m ²	아파트
11층	324.464m ²	아파트	12층	324.464m ²	아파트
13층	324.464m ²	아파트	14층	324.464m ²	아파트
15층	324.464m ²	아파트	16층	324.464m ²	아파트
17층	324.464m ²	아파트	18층	324.464m ²	아파트
19층	324.464m ²	아파트	20층	324.464m ²	아파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 대 105721.5m²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층 [] 호 철근콘크리트구조 59.99m²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105721.5분의 34.1624. 끝.

